



제432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원천공제 개시 전 의무상환 시 4,12회 분납 근거 마련〉
■ 고민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239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고민정 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6. 1. 22.
3. 회부연월일 : 2026. 1.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무상환액이 있는 근로소득자는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 시 통지받은 원천공제 금액의 전부를 미리 납부하거나 원천공제 금액의 2분의 1씩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무상환액이 발생하였음을 통지받은 원천공제의무자는 통지받은 금액을 12분의 1로 나누어 매월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할 수 있으나, 의무납부자가 아닌 사람은 원천공제를 개시하기 전에 통지받은 원천공제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 원천공제 금액의 전부 또는 2분의 1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을 뿐, 분기납 또는 월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인 채무자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를 월납 또는 분기납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전체 일시 납부, 2분의 1 납부에 더하여 4분의 1로 나누어 내는 분기납, 12분의 1로 나누어 내는 월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7항).

Ⅲ.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근로소득자가 원천공제 개시 전 원천공제 금액을 미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금액을 4회, 12회 분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근로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① ~ ⑥ (생략)	제24조(근로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 등을 통지받은 채무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공제를 개시하기 전에 통지받은 원천공제 금액의 전부를 미리 납부하거나 원천공제 금액의 <u>2분의 1씩 2회로</u>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⑦ ----- ----- ----- ----- ----- ----- ----- <u>2분의 1씩 2회, 4분의 1씩 4회 및 12분의 1씩 12회로</u> -----.
⑧·⑨ (생략)	⑧·⑨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ncome Contingent Loan, 이하 “ICL”이라 함.)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연이자 1.7%)하고, 그 원리금은 소

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소득이 발생하여 대출 상환 능력을 갖추었을 때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여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재학 기간 중 생계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이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4조¹⁾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그 소득이 의무상환소득(3,037만원, 26년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상환 의무가 발생하고, 원천공제 의무자는 채무자의 근로소득에서 의무상환액을 공제하여 공제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때, 원천공제 의무자란 채무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이

-
-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4조(근로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① 의무상환액이 있는 자로서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전년도 근로소득(같은 법 제144조의2에 따른 전년도 사업소득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채무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와 원천공제 의무자에게 원천공제 금액 등을 통지한다.
-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원천공제 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원천공제 의무자가 채무자의 근로소득에서 의무상환액을 공제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 의무자가 원천공제를 하지 아니하거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원천공제 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⑤ 원천공제 의무자는 제2항에 따른 원천공제 납부를 하는 때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 증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교육부장관은 원천공제 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과 제30조에 따른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원천공제 의무자에게 징수한다.
- ⑦ 제1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 등을 통지받은 채무자는 원천공제 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공제를 개시하기 전에 통지받은 원천공제 금액의 전부를 미리 납부하거나 원천공제 금액의 2분의 1씩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 ⑧ 제1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 등을 통지받은 채무자는 원천공제 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공제를 개시한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 금액 중 남은 금액 전부를 납부할 수 있다.
- ⑨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원천공제 및 납부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며, 근로소득을 채무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그 중 일부를 원천공제하여 공제된 금액을 원천공제의무자가 대신 납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제3항²⁾은 원천공제의무자가 원천공제하는 금액은 의무상환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채무자는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의 방식으로 12개월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4조제7항은 원천공제를 개시하기 전에 의무상환액을 미리 납부하려는 채무자는 그 금액을 전부 납부하거나 원천공제 금액의 2분의 1씩 2회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21조(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원천공제) ③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가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금액 또는 연금소득금액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의무상환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채무자의 이직 등으로 해당 원천공제기간 중에 직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원천공제의무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원천공제한다.

- 상환 의무가 발생한 채무자들은 개인의 필요에 의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원천공제통지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채무자들은 5월 31일³⁾까지 의무상환액의 전부 또는 2분의 1을 납부한 경우 사업자에게 원천공제통지가 가지 않게 되며, 6월 30일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천공제통지는 사업자에게 가게 되나, 실제 원천공제는 이루어지지 않게 됨.

□ 이에 개정안은 의무 상환액을 원천공제 개시 전 미리 납부하고자 하는 채무자들에게 일시납과 2회 분납 뿐만 아니라 4회, 12회 분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의무상환액은 납부 경로와 무관하게 동일한 채무라는 점에서 개인 사정에 따라 미리 납부하고자 하는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추어 상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자금 상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 현재 의무상환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으로 원천공제 대상자는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21조(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원천 공제) ①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금액을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한 이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원천공제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연말정산 신고: 신고연도의 6월 30일

연말정산 신고연도의 6월 30일 이내에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 금액을 통지해야 하므로 국세청에서는 6월 초에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함. 이에 따라 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기를 원하는 채무자의 경우 5월 31일까지 미리 납부하면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음.

총 175,621명으로, 이 중 절반 정도(50.6%)인 88,785명이 의무상환액을 미리 납부하였는데, 원천공제 개시 전 납부하는 인원이 절반 이상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채무에 대하여 분납 가능 횟수를 늘리는 것은 실질적인 학자금 상환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의무상환 현황 및 원천공제 개시 전 미리납부 현황>

(단위: 명, %, 억 원)

통지연도	원천공제대상자(채무자)		미리납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20	159,407	2,584	49.1 78,296	42.5 1,097
2021	157,485	2,596	50.1 78,915	43.4 1,127
2022	164,568	2,842	50.1 82,488	43.1 1,225
2023	181,409	3,295	49.1 88,996	42.0 1,383
2024	175,621	3,235	50.6 88,785	43.1 1,393

자료: 국세청

□ 다만, 부칙의 시행일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국세청은 개정 조항 적용 시기의 명확화를 위해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데,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칫 시행일이 포함되는 연도부터 미리납부의 분납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현행 원천공제 제도에 따르면, 전년도(N-1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의무상환액을 당해연도(N년) 7월 1일부터 12개월간 분납(N년 7월 ~ N+1년 6월)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의 적용을 개정안이 시행되는 연도의 귀속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 산정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개정안의 시행일이 2026년이라면 2026년 귀속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 산정부터 적용됨.

문 의 처
02) 6788-5193